



# 택시 LPG 유류세 면제를 위한

##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(안)

국세청

택시 유류구매 카드제가 '08.5.1일부터 시행되었  
다. 국세청은 유류구매카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  
행지침을 마련하였다.

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| 2. 추진 경위                   |
| 3. 관련 근거                      | 4. 적용 범위                   |
| 5. 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| 6. 카드사용 의무화                |
| 7.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      | 8. 유류구매카드 종류               |
| 9.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                | 10. 카드발급 등에 대한 예외사항 및 처리방법 |
| 11. 유류세 면제 및 환급               | 12.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의 방지        |
| 13.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충전소에 대한 유류대금정산 | 14. 부칙                     |



### 1. 추진 배경

-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의 유류세 면제
  - 단,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‘여신전문금융업법’ 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 구입

### 2. 추진 경위

- 정부, 택시 LPG의 유류세 면제를 위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도입 결정(’08. 01)
- 택시 LPG의 유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’08. 2. 26)
- 전문연구단체 연구원·사업자단체 임원·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우선 협상대상자(신한카드) 선정(’08.2.28)
- 국세청과 사업시행자간 사업추진 협약 체결(’08.3.28)

### 3. 관련 근거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3

### 4. 적용 범위

- 이 지침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선정·관리,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, 부정사용 방지 및 유류세 환급 신청 등에 관하여 적용

### 5. 용어의 정의

- 『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』  
택시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

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면, 신용카드업자는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, 유류세를 포함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대금을 충전소에 지급한 후 동 유류세를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는 제도

#### ○ 『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』

택시 운송사업자가 면세유류를 구매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카드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 (이하 “유류구매카드”라 한다)

#### ○ 『관할세무서』

유류세 환급을 신청하는 신용카드업자 소재지관할 세무서



#### ○ 『관할관청』

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인·허가 및 면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도지사의 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)·특별자치도지사

#### ○ 『택시운송사업자』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#### ○ 『신용카드업자』

국세청장이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 시



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

○ 『신용카드』

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

○ 『체크카드』

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

○ 『선불카드』

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현금을 충전하여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

○ 『거래카드』

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결제 기능이 없이 거래내역 확인 기능만 있는 카드

○ 『대체카드』

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거래카드 분실·훼손시 카드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

6. 카드사용 의무화

- 택시운송사업자는 유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의무적으로 사용
-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면세환급 청구 가능
  -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(양수·상속·대리운전시 포함)취득자의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카드수령일까지 기간동안의 유류거래분에 대한 유류세
  -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분실·훼손의 경우 유류구매카드 재발급 신청일부터 카드수령일까지 기간동안의 유류거래분에 대한 유류세
  - 기타 국세청에서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유류거래분에 대한 유류세



## 7.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

### 가. 대상자 선정

- 신용카드업자는 관할관청 및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 등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국세청에 사업자 여부 등 확인 요청

⇒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사업 영위자로 확인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 발급

### 나. 대상자 자격요건 변동상황 관리

- 신용카드업자는 면제대상 택시운송사업자의 자격요건 변동상황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하고, 변동상황을 유류구매카드와 연계 관리

- 휴·폐지, 양도, 상속 등에 의한 자격 상실

- 택시운송사업자는 즉시 관할관청에게 자격변동 사실 통보 및 신용카드업자에게 유류구매전용카드 반납
- 관할관청은 운수행정통합시스템에 해당내역을 입력

⇒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유류세 면제 기능 정지

- 폐업 또는 기능정지 및 발급대상 제외 사유 해당으로 인한 자격 상실

-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해당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 통보

⇒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의 유류세 면제 기능 정지

## 8. 유류구매카드 종류

- 일반택시운송사업자 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거래카드, 대체카드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 :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

## 9. 유류구매카드 발급절차

### 가. 신규 발급

#### ○ 발급 대상

택시 면허 취득자(양수·상속 포함)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대리운전기사

#### ○ 발급 신청

- 신청 방법 : 서면, ARS신청(개인택시) 방법중 선택

· 서면 신청서 접수 : 관할관청, 신용카드업자(신한카드) 전국 지점

· ARS : 080-800-0001

※ 유류구매카드 발급 절차 흐름도 : <별표1>

- 신청시 제출할 서류

· 개인택시운송사업자 :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, 차량등록증

· 일반택시운송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(대표자인감)

· 대리운전기사 : 관할관청에 신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 신고서, 신분증, 차량등록증

※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,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

#### ○ 발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

-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대리운전기사 적격 여부를 국토해양부의 운수행정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확인 요청을 하며, 택시운송사업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사업 영위 여부는 국세청에 확인 요청

·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신청서 접수시에 택시운송사업 적격 여부 및 사업 영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(차량번호, 사업자번호, 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등)를 취득하여 이를 국

세청 및 관할관청에 통보

- 관할관청 및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택시운송사업 적격 및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에 유류세 면제 기능을 부여

○ 카드발급 및 교부

– 발급카드 매수
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대리운전기사

\* 차량 1대당 1매 발급

-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\* 거래카드 : 차량 1대당 1매 발급

\* 결제카드 :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매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추가 발급 가능

\* 대체카드 : 차량 30대당 1매 발급

-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, 신청서상에 기재한 유류구매카드 수령지로 인편(특송업체) 또는 등기로 전달

나. 재발급

○ 재발급 대상

- 유류구매카드 분실 및 훼손의 경우
- 유류구매카드에 부가되는 기능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)의 추가 또는 변경의 경우
- 사업용자동차 정보(차량번호, 유종, 사업장 소재지 등)가 변경된 경우

○ 재발급 신청 처리 절차

– 분실 및 훼손시
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

\* 신용카드업자(신한카드) 상담실로 신고(지역번호 없이 1544-7000)

- 일반택시운송사업자

\* 일반택시사업자 관리시스템

(www.lpgcard.com)을 통해 신청

- 사업용자동차 정보(차량번호, 유종 등) 변경시

· 신청서 재작성

· 신용카드업자 상담실로 증빙서류를 FAX 제출 가능

· 국세청 및 관할관청의 적격 여부 심사 후 발급

- 카드 기능 추가 및 변경시(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)

· 신청서 재작성

○ 카드발급 및 교부

- 분실·훼손 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상에 기재한 카드 수령지로 인편(특송업체) 또는 등기로 교부

10. 카드발급 등에 대한 예외사항 및 처리방법

가. 신용카드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처리방법

○ 카드사용자의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재발급

○ 금융채무불이행, 통장에 대한 압류 등의 사유로 신용·체크카드 사용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 선불카드 발급

나. 택시운송사업자의 카드 분실·훼손 등 카드사용 의무화 예외 사유 해당시 처리방법

○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분실·훼손하거나 차량을 양수·상속·대리운전시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발급신청

–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분실·훼손한 때에는 즉



시 신용카드업자에게 재발급신청하고 카드수령일까지 대체카드 사용

-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발급 신청일로부터 카드수령일까지 기간동안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기간동안의 구입내역을 「카드 분실·훼손 등 기간 유류구매내역」서식(별표2)을 작성하여 카드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신용카드사 지점을 방문하여 제출
  - <별표 2>서식 작성시 카드 분실·훼손 및 양수·상속·대리운전일부터 카드수령일까지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
-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유류구매 내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유류세를 차감하여 택시운송업자에게 청구하고, <별표 2>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유류세를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

### 11. 유류세 면제 및 환급

#### 가. 유류세 면제

- 면제 대상
  - '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' 제3조 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과 라목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
- 면제 범위
  -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(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- 63호, '08.4.23)

#### 유류세 환급 금액 산정 예시

2008년 5월 1일, 서울 A 충전소에서 LPG 4만원을 구입했을 때  
(08년 5월 서울 LPG 기준유가 750원 가정)

- ▶ 사용량 산출 :  $40,000 \div 750 = 53.33\ell$   
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)
- ▶ 유류세 산출
  -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중 일반사업자 :  $53.33\ell \times 169.47\text{원} = 9,037\text{원}$ (원단위 이하 절사)
  - 개인택시 중 간이과세자 :  $53.33\ell \times 186.41\text{원} = 9,941\text{원}$ (원단위 이하 절사)
    - \* 186.41원 =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금액 169.47원 + 부가세 면세금액 16.94원(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에 한하여 환급)
    - \* 신용카드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유류세 환급 신청시에는 각 세목별로 구분하여 청구

· 면제 세액은 개별소비세·교육세 169.47원/ℓ, 부가가치세 16.94원/ℓ이며, 서울 변동으로 인한 면제 세액 변동시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개별통보

- 면제 기간
  - 2008.5.1부터 2010.4.30까지

#### 나. 유류세 환급

- 환급 주체
  - 국세청(신용카드업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)
- 환급 신청자
  - 신용카드업자

- 환급세액 산정 방법
    - 신용카드업자는 매월 시·도별로 평균 판매 단가 (한국석유공사 www.petronet.co.kr 공시가격)를 기준유가로 정하고, 유류구매카드 이용 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누어 유류세 환급 금액을 실시간 정산
  - 환급 절차
    -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월별 유류사용 내역을 익월 5일까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송부하며, 국세청은 동 자료에 의해 유류세 면제 내역 적정성 검증
    - 신용카드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한 유류에 대한 유류세 상당액을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
    - 관할 세무서는 신용카드업자의 유류세 환급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말일까지 신용카드업자에 환급
- ※ 유류세 면제 및 환급절차 흐름도 : <별표 3>

- 관할세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매월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는 유류 사용 내역 및 유류세 면제 내역을 환급업무에 활용
- ※ 신용카드업자는 환급신청 내역 상세자료 제출 : <별표 4>

## 12.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의 방지

### 가. 부정사용 방지대책

- 사용내역 관리
  - 신용카드업자는 차량별 사용일자·사용시간·사용량·사용지역·사용횟수 등 상세한 유류사용 내역 및 특이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국세청에 제공
  - 정기적인 통계자료 제공
    - 월 거래금액 상위 5% 이내 사용자 명세
    - 기타 국세청의 요청 자료
- 자동차번호 확인 및 부정사용자 신고 포상 제도 운영
  - 신용카드업자는 가맹 충전소로 하여금 주유시 전용카드전면의 자동차번호를





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지도·관리

- 신용카드업자는 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사용(자동차번호 상이 등) 신고시 신고 포상제도(50만원 이상 포상금 지급) 운영

○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

- 신용카드업자는 카드 발급 및 청구서 등 안내문 발송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정사용 적발시 면세액 추징은 물론,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
- 충전소에는 담합에 의한 부정행위 등 금지를 집중 계도

나.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시 제재

○ 유류구매카드 기능 정지 및 발급대상에서 제외

-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

○ 환급세액과 가산세(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)의 합계액을 징수

-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 받은 경우
-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
-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
-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

이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

13.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충전소에 대한 유류대금 정산

○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거래카드로 구매한 연료대금을 거래카드 사용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5일까지 결제카드로 결제. 단,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충전소간의 개별약정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름

○ 미결제금액 발생의 경우, 충전소는 신용카드업자에게 미납사실 통보 및 거래정지 요청을 하며,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미결제시 거래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음을 충전소의 요청 후 3일 이내에 통보

○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미결제금액을 신용카드업자의 통보 후 1개월 이내 결제하지 않을 경우, 신용카드업자는 2영업일 이내 해당 거래카드에 대하여 거래정지를 등재

○ 신용카드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미결제금액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충전소의 요청에 의해 거래정지를 등재한 거래카드의 거래정지를 해제

14. 부칙

- 본 지침은 2008.5.1.부터 시행
- 2008.4.30. 이전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신청자 중 2008.5.1. 현재 카드 미발급 택시운송사업자의 2008.5.1.부터 카드수령일까지 기간 동안의 유류구입분에 대하여는 카드 분실·훼손 등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